

인천지방법원 2019. 2. 1 선고 2017가합1994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주식회사 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2. 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1995. 10. 13. 접수 제3289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1997. 4. 22. 접수 제1378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 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 판결)

재판장판사이원중

판사김재경

판사백우현

별지